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 으로 규정〉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35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 목 차

|                                |    |
|--------------------------------|----|
| I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           | 1  |
| 1. 제안경위 .....                  | 1  |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3. 검토의견 .....                  | 3  |
| 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 변경 ..... | 3  |
| [참고자료]                         |    |
| 참고 1.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요건 .....    | 14 |

## I. 송옥주의원 대표발의(2200735)

###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6. 20.

다. 회 부 일 : 2024. 6. 2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해당 금액은 2009년에 2007년의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6,414만원에 이르게 된 현재까지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농업 외 소득 3,700만원이라는 금액은 기본직불금은 물론 농민공익

수당, 취득세·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보조사업 지원 등 농업 전반의 각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됨에 따라 청년농과 복합농 등 기존 농업인구의 이탈은 물론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 제한을 유발할 뿐 아니라 농업 연계산업의 발전까지도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으로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 3. 검토의견

#### 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 변경(안 제9조제3항제1호)

#####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의 하나를“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이를 연 3,7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기준은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 ② (생략)<br>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1.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65----- |
| 2. ~ 5. (생략)                         | 2. ~ 5. (현행과 같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① 3,700만원 기준은 도시가구의 배우자, 자녀 등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참고해 설정한 것이지만, 2009년 제도 시행 당시부터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 적용 시 이를 가구가 아닌 직불금 신청자 개인의 소득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이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 ② 2023년 “농가”의 평균 농업외소득이 2,000만원인 상황에서, “개인”에게 적용하는 현 기준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농업 외 소득기준을 인상할 경우 타 분야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농업인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농외소득 기준을 완

화하는 조치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3) 제21대국회 심사경과

제21대국회에서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23.5.31.)」이 발의된 바 있음.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2023.9.15.)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었음(2024.5.29.).

### 4) 검토의견

####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개요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됨.

이 중 기본직접지불제도는 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과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됨.

【표 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내용

| 구 분             |                                                | 지급 요건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br>직접<br>지불제 | 소농직불금                                          | 일정 요건(① 면적 0.5ha 이하, ② 농촌거주 3년 이상, ③ 농업 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을 모두 충족하는 소농에게 <u>면적 관계 없이 연 120만원</u>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적직불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농가 당 신청 가능면적: 0.1ha~30ha(법인 0.1ha~50ha)</li><li>•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li><li>•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li></ul> <p>* <u>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농지의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u></p> <table><tr><th>구간</th><th>1구간</th><th>2구간</th><th>3구간</th></tr><tr><th>단계</th><th>(2ha 이하)</th><th>(2ha초과~6ha이하)</th><th>(6ha 초과)</th></tr><tr><td>① 논·밭 농업진흥지역</td><td>205</td><td>197</td><td>189</td></tr><tr><td>② 논 진흥지역 밖</td><td>178</td><td>170</td><td>162</td></tr><tr><td>③ 밭 진흥지역 밖</td><td>134</td><td>117</td><td>100</td></tr></table> |          |     |  | 구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단계 | (2ha 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 초과) | ① 논·밭 농업진흥지역 | 205 | 197 | 189 | ② 논 진흥지역 밖 | 178 | 170 | 162 | ③ 밭 진흥지역 밖 | 134 | 117 | 100 |
|                 | 구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    |     |     |     |    |          |               |          |              |     |     |     |            |     |     |     |            |     |     |     |
| 단계              | (2ha 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① 논·밭 농업진흥지역    | 205                                            | 197                                                                                                                                                                                                                                                                                                                                                                                                                                                                                                                                                                                               | 189      |     |  |    |     |     |     |    |          |               |          |              |     |     |     |            |     |     |     |            |     |     |     |
| ② 논 진흥지역 밖      | 178                                            | 170                                                                                                                                                                                                                                                                                                                                                                                                                                                                                                                                                                                               | 162      |     |  |    |     |     |     |    |          |               |          |              |     |     |     |            |     |     |     |            |     |     |     |
| ③ 밭 진흥지역 밖      | 134                                            | 117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선택<br>직접<br>지불제 | 친환경직불제<br>(농업, 축산),<br>경관보전직불제<br>+<br>전략작물직불제 | 지급대상 농·축산물, 지급대상 농지 등을 대통령령 및 고시 등으로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2024.8.2. 제출)

현행법 제9조제1항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농업인등으로서 ①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조건불리 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휴경 중인 농지등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 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 면적이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 나. 등록신청연도 직전 최근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한편, 제9조제3항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를

-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②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이 중 ①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금액에서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sup>.

현재의 농업 외 종합 소득 3,700만원 기준이 정해진 경과를 살펴보면, 2003년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도입 이후 2008년 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 가운데 실경작자가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 이가 28만명, 농민이 아닌 전문직 종사자 등이 1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sup>2)</sup>.

이에 정부는 취미농, 겸업농 또는 타 분야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외소득 상한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임.

-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2) <파이낸셜뉴스, “쌀직불금 감사결과 발표 수령자 중 28% 비농업인 추정('08.10.14)>

쌀소득보전직접 지불제도가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14일 오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감사원이 전산분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17~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실제 농업인 중 13~24%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직불금 누수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소득 직불제 지급의 전제인 농지원부 등 실경작자 확인시스템이 부실하고 자치단체의 집행인력 부족 등 집행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특히 직불금을 수령한 서울·과천 거주자 4,662명을 분석한 결과 수령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업을 가진 자가 2,942명(61%)에 달했고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도 전체 30억원 가운데 1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수매사실이 없는 자는 96.96%인 4,520명이었고, 서울·과천 거주자로서 직불금 수령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업을 갖고 있는 자 2,942명 중 수매사실이 없는 자도 96.68%(2,844명)에 달해 대부분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당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이 3,674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농외소득이 3,700만원을 넘어서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임.

**【표 3】 연도별 전체가구소득(경상소득): 2017~2021년**

(단위: 만원)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전체가구소득<br>(경상소득) | 5,705 | 5,828 | 5,924 | 6,125 | 6,414 |
| 전체가구소득의<br>65%   | 3,708 | 3,788 | 3,851 | 3,981 | 4,169 |

주: 소득은 조사연도의 전년 기준 자료임(조사 시 전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조사함)

- 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② 개정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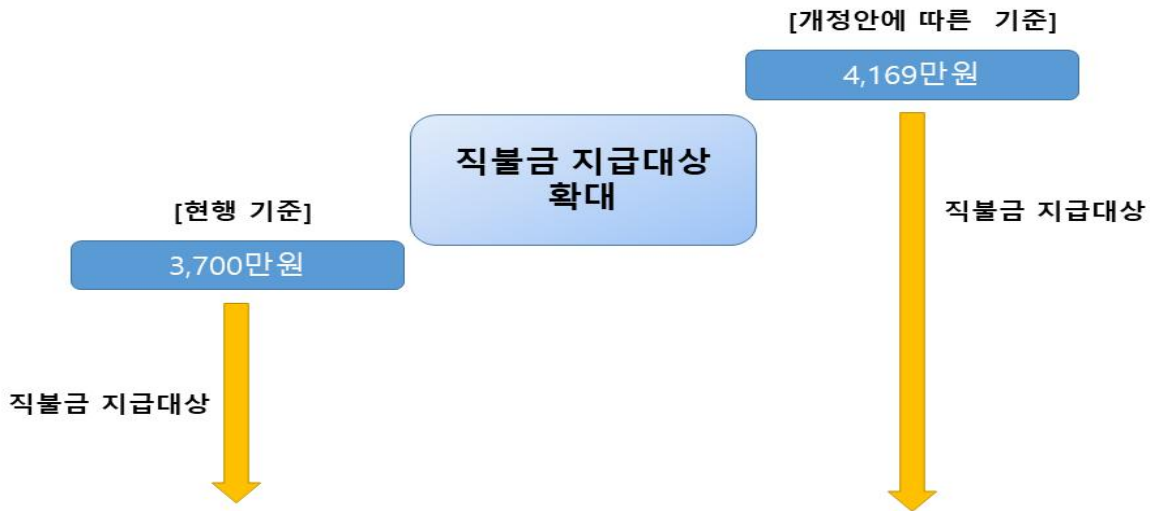
개정안은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연 3,700만원으로 설정한 이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6,414만원에 이르게 된 것을 고려한 것임.

이에 더해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에서 “직전 연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sup>3)</sup>.

3) 개정안을 발의한 송옥주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현행 농외소득 기준액대비 10% 정도 상향하는 수치를 역산한 것이라고 함

- ‘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전국가구 소득액 6,180만원  $\times$  0.65 = 4,017만원으로, 현행 농외소득 기준액 3,700만원 대비 약 8.6% 상향한 수치임

## 【그림 1】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 변경에 따른 직불금 지급 대상



현행법령상의 기준(연 3,700만원)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제외 기준 뿐만이 아니라 취득세·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보조사업 지원 등 각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됨<sup>4)</sup>.

- 4)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그 결과 청년농과 복합농 등 기존 농업인구의 이탈은 물론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사람을 가급적 줄여 수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더욱이 도·농간 소득 격차의 심화에 따른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2023년도 기본직불금 신청자 중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으로 제외된 대상은 평균 10,167건으로, 직불금 지급 규모로는 약 120억원에 해당하며,

이 중 농외소득 기준을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할 경우 수급이 가능해지는 대상은 2021~2023년간 평균 4.4천건, 약 5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함<sup>5)</sup>.

즉, 개정안에 따를 경우 연간 4,400건의 신청이 추가될 것(약 50억원 소요)으로 예상됨.

---

5) 다만, 이는 직불금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추산한 수치이며, 기존에 신청하지 않던 농가가 추가 신청 시 소요되는 예산은 추산하기 어려움

**【표 5】 지난 3년('21~'23년)간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자 중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 변경에 따른 수급 여부**

| 연도     | 신청건수<br>(천건) | 지급결과       |            | 3,700만원 이상<br>(농업 외 종합소득) |                  | 연평균 가구 소득<br>65/100 미만* |                 |
|--------|--------------|------------|------------|---------------------------|------------------|-------------------------|-----------------|
|        |              | 건수<br>(천건) | 금액<br>(억원) | 건수<br>(건)                 | 예상금액<br>(억원)     | 건수<br>(건)               | 예상금액<br>(억원)    |
| 2021년도 | 1,138        | 1,122      | 22,263     | 9,742<br>(0.87%)          | 122.4<br>(0.55%) | 2,091<br>(0.19%)        | 26.6<br>(0.12%) |
| 2022년도 | 1,153        | 1,129      | 21,943     | 11,246<br>(1.00%)         | 135.2<br>(0.62%) | 3,597<br>(0.32%)        | 42.7<br>(0.19%) |
| 2023년도 | 1,327        | 1,285      | 23,018     | 9,512<br>(0.7%)           | 102.0<br>(0.44%) | 7,432<br>(0.6%)         | 80.9<br>(0.35%) |
| 평균     | 1,206        | 1,179      | 22,408     | 10,167                    | 120.0            | 4,373                   | 50.1            |

\*) 해당 연도별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연도별 직불금 신청자 중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서 65% 미만인 경우임7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자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으로 “신청자의 가구원에 따른 소득기준금액”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한 근거로는 “중위소득, 가계조사통계의 가계소비지출액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4】 수당·지원금 등의 지급 기준 관련 용어 비교**

| 관련 법령         | 조문                       | 내용                                                                                                                                                                        |
|---------------|--------------------------|---------------------------------------------------------------------------------------------------------------------------------------------------------------------------|
| 독립유공자법<br>시행령 | 제9조의3<br>(생활조정수당<br>지급액) |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

|                    |                             |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2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생활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        |         |      |         |        |         |        |         |
|--------------------|-----------------------------|-----------------------------------------------------------------------------------------------------------------------------------------------------------------------------------------------------------------------------------------------------------------------------------------------------------------------------------------------------------------------------------------------------------------------------|--------|---------|------|---------|--------|---------|--------|---------|
| 고엽제법<br>시행령        | 제9조의9<br>(생계지원금<br>지급기준 등)  |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b>기준 중위소득</b> 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b>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 소비지출액</b> 등을 고려하여 <b>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b>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         |      |         |        |         |        |         |
| 참전유공자법<br>시행령      | 제8조의3<br>(생계지원금의<br>지급기준 등) |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b>기준 중위소득</b> 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b>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 소비지출액</b> 등을 고려하여 <b>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b>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         |      |         |        |         |        |         |
| 조세특례<br>제한법        | 제100조3<br>(근로장려금의<br>신청자격)  |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br><table><tr><th>가구원 구성</th><th>총소득기준금액</th></tr><tr><td>단독가구</td><td>2천200만원</td></tr><tr><td>홀벌이 가구</td><td>3천200만원</td></tr><tr><td>맞벌이 가구</td><td>3천800만원</td></tr></table>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천200만원 | 홀벌이 가구 | 3천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천800만원 |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        |         |      |         |        |         |        |         |
| 단독가구               | 2천200만원                     |                                                                                                                                                                                                                                                                                                                                                                                                                             |        |         |      |         |        |         |        |         |
| 홀벌이 가구             | 3천200만원                     |                                                                                                                                                                                                                                                                                                                                                                                                                             |        |         |      |         |        |         |        |         |
| 맞벌이 가구             | 3천800만원                     |                                                                                                                                                                                                                                                                                                                                                                                                                             |        |         |      |         |        |         |        |         |
| 조세특례<br>제한법<br>시행령 | 제100조의3<br>(연간총소득범<br>위)    |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        |         |      |         |        |         |        |         |

※ 자료 :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law>)

|              |
|--------------|
| 문 의 처        |
| 02)6788-5414 |

## 참고자료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요건

| 구분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요건                                                                                                                                                                                                                                                                                                                                                                                                                                                                                                                                                    |                                                                                                                                                                                                                                                                                                                                |
|----------|--------------------------------------------------------------------------------------------------------------------------------------------------------------------------------------------------------------------------------------------------------------------------------------------------------------------------------------------------------------------------------------------------------------------------------------------------------------------------------------------------------------------------------------------------------------------|--------------------------------------------------------------------------------------------------------------------------------------------------------------------------------------------------------------------------------------------------------------------------------------------------------------------------------|
|          | 농지                                                                                                                                                                                                                                                                                                                                                                                                                                                                                                                                                                 | 농업인                                                                                                                                                                                                                                                                                                                            |
| 공통<br>사항 | <p>▶ 과거 쌀직불('98~'00), 밭직불('12~'14), 조건불리직불(2003~2005) 중 어느 하나의 직불 및 기간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지</p> <p>※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농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li> <li>•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li> <li>•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li> <li>•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공유지 무단점유 등)</li> <li>•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 등</li> </ul>                                                                                                                                                                           |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법인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수령자) '16년 이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또는 공익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자</li> <li>• (정책 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의 정책 요건 해당자</li> <li>• (신규 신청자)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 4,500만원)이상</li> </ul> |
| 소농<br>직불 | <p>▶ 농가 당 신청 가능면적: 0.1ha~0.5ha</p> <p>▶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지 면적 합이 0.1~0.5ha 이하</li> <li>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li> <li>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li> <li>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li> <li>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li> </ol> <p>▶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li> <li>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li> </ol> <p>*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p> <p>▶ 농가 당 120만원 일괄 지급</p> |                                                                                                                                                                                                                                                                                                                                |
| 면적<br>직불 | <p>▶ 농가 당 신청 가능면적: 0.5ha~30ha(법인 0.5ha~50ha)</p> <p>▶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p> <p>▶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p> <p>▶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p> <p>▶ 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이고,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p>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2024.8.2. 제출)